第290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2010年5月19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제2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
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4.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附議된案件

o 국무위원(행정안전 맹형규) 인사 ····· 4
1. 제2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의장 제의) ····· 4
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 5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2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2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2
7.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의원 대표발의)(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 12
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4
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1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승민・유성엽・정해걸・주광덕・홍정욱・이명수・이한성・신학용・노철래 의원 발의) ····· 14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이범래・김정권・고승덕・유성엽・한선교・이한성・김성수・여상규・진성호・김소남 의원 발의) ····· 15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한성・정옥임・황우여・신성범・안효대・강용석・박순자・김성조・김정훈・신지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장제원 의원 발의) ····· 15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김낙성 의원 발의) ····· 15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김낙성 의원 발의) ····· 16
1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
2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김성회・김우남・나경원・노철래・박대해・박상은・서종표・송영선・안규백・양정례・유기준・원희룡・이명수・정진석・최구식 의원 발의) ····· 17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18
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이은재・신학용・김영진・최구식・한선교・이명규・박대해・장광근・권영세・정의화・유재중・장제원・이한성・손범규・김기현・신영수・박순자・김재균・최철국・정태근・조승수 의원 발의) ····· 19

24.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9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시종・최철국・김재균・김창수・우윤근・김진표・주승용・이춘석・변웅전 의원 발의) ····· 19
27.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28.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21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21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21
3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21
3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성엽・유승민・임동규・이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김영진 의원 발의) ····· 21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23
3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3
36.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4
o 5분자유발언 ····· 24

(14시30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정수성 의원의 소개로 경북 경주 선덕여중 학생 20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방청석을 향하여 일부 의원 손을 흔듦)

자, 잘 정돈해 주세요, 이제.

오늘은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 참석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회의인 관계로 두 분 부의장께서도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말씀을 겸해서 작별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저도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바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회고하면, 이번 18대 국회 전반기는 '정권과 의회 세력의 동시 교체'라는 전환기에 출발해서 여러분이 몸소 겪었다시피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과연 국민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떳떳했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수에 의한 힘의 정치'와 '소수에 의한 버티기 정치'가 충돌하면서 미증유의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위기 앞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를 맞아 신속하게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안보 위기와 사회 위기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포용하면서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 건수나 법률안 총처리 건수도 역대 최다입니다. 싸우면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선진화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나라가 잘되려면 개헌을 해야 하고, 국회가 잘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18대 후반기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파행과 격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투쟁은 쉽고 타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가야 합니다. 의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대표는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장외에 머무는 한 한국 정치 발전은 요원합니다.

김진표 의원의 사직 건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반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의 신분 조항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상투표 문제는 이제 신의정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마저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선상투표 문제로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과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취임하면서 밝힌 3대 목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중에 같은 강을 아홉 번 건넜다"는 연암 박지원의 일야구도하(一夜九渡河)의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요동치는 강을 건널 때는 눈과 귀를 믿으면 병이 되고, 마음을 믿으면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정치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 봅시다. 정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정치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격동의 강을 건너시느라 의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o 국무위원(행정안전 맹형규) 인사

(14시39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임명되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신임 행안부장관 맹형규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맹 장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9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290회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현재 궐원된 위원 1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양문석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오늘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배부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천 의원, 이진복 의원, 전혜숙 의원, 윤상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을 추천

하는 단기식 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시고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오 의장석에서 볼 적에 왼쪽 투표소 쪽에 아직 투표가 덜 되어 있는데요,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패를 받아서 좌우 어느 쪽이든지 가서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투표하실 적에 자기가 명패를 받은 곳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 가서 투표를 해도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8분 투표종료)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1표 중 가 170표, 부 36표, 기권 5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15시00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정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는 동안 성원해 주신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파트너로 활동을 한 민주당 우윤근 수석께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안전 업무 및 테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먼저 법률 제명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고 테러와 관련된 자구를 삭제 조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경호안전구역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종래 다자간 정상회의장 주변의 대규모 시위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행사장인 코엑스 주변은 혼잡지역으로 소규모의 집회에도 일대의 교통 혼란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가 과격 또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경호안

전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G20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 이동로 주변 지역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등 보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여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첫 번째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들이 매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처리한 법안이고, 그리고 또한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매우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법안 한번 의원님들, 아마 이 법안 내용을 꼼꼼히 안 보셨을 것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통제단장이 있습니다. 통제단장이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처장입니다. 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과 그리고 또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G20 정상들을 잘 안전하게 경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G20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그러니까 통제단장입니다—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군병력 동원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도록 이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0년 ASSEM 회의와 2005년 APEC 회의 그리고 G20보다 더 큰 회의들도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호 수준은 세계 어느 데 내놓아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큼 철저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를 개최하면서 거의 저희가 볼 땐 준계엄 상태로 국민을 통제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상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 제6조는 경호안전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국민의 활동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통제단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중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들이 마음 놓고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또 현행 법률 및 그리고 또 예산상의 근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경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로도 입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안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은 만들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과 예산으로도 충분히 경호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가 과도한 일이다,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를 오히려 웃음거리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안과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법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딱 맞췄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규 의원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 G20 관련 법에 대한 반대토론의 요지는 첫 번째는 이것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겠냐 이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불필요하게 군 병력을 동원하느냐, 대통령이 군을 이렇게 계엄도 아닌데 동원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나가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집회 및 시위의 제한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이 논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또 범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 대회를 제대로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복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서 또 그 정상들이 숙식을 하는 주변에서 그리고 이동하는 주변에 최소한도 필요한 정도에서 질서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제37조2항의 질서유지에도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활동을 위해서 경호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경호안전구역 내에서만 이와 같은 제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본권의 제한이다.', '위헌이다.'고 한다면 헌법 제37조2항을 무력화하는 이런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군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5조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계엄도 아닌데 왜 군대가 나오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헌법 77조1항의 계엄 관련 규정은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계엄 선포가 가능하게 한 근거규정일 뿐이지 계엄 선포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군을 동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적 의미의 규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때에 국가의 산악지역이나 교량, 가스저장소 같은 대민접촉이 없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테러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 병력의 배치,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써먹어야만 하는 군 본연의 임무요, 우리 국군통수권의 작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G20 정상회담이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오 손범규 의원 아주 시간도 잘 지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앞서 손범규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37조2항 헌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제37조2항의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할 때에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인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비교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져 보십시오.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 이미 ASEM 회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경우에도 외국 정상 누가 오든지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집시법 이외의 제한으로 제한한 전례가 없습니다.

집시법은 이미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이 오면 그리고 외국의 대사가 오면 그곳이, 공관과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의 공무소와 똑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연 기존에 하고 있던 제한과 이번에 또 하는 제한을 같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5조 제1항이 군이 계엄 말고는 동원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소치입니다. 87년 헌법은 80년 광주학살을 극복하고 생겨났습니다.

87년 광주학살을 극복한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통합방위법도 역시 적이 침투하지 않는 한, 또는 적이 침투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군은 경찰행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5·18광주민주화항쟁 30주년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이 벌어진 그 다음날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군이 시민들에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국민들과 직접 맞서지 않는 곳에 배치함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이 법에는 군을 국민들과 절대로 얼굴조차 마주치지 못할 곳에만 배치하겠다라는 제한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판단기준이 대통령실경호처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판단기준도 없습니다. 완전히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헌법 조항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시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조항이 왜 들어갔습니까? 군은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정부가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군이 나서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헌법조항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 국회, 이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검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실 경호처차장이 운영위회의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법안내용을 준비했다, 청부입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법이 정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4월 27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이 법안을 국회의 저희 의원실로 들고

왔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법안이 논의된 지 1시간 반 만에 통과됐습니다. 공청회 생략됐습니다. 법안소위 회부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정부가 만든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과연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입법부의 자존심과 권위를 어디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함부로 군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지 심도 깊게 토론해야 합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된 이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교섭단체 합의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토론 중입니다마는 방청석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소개로 광주서석고등학교 학생 80인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방청하러 온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올해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총 35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고 공식 수행원만 3000명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국제 테러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 등에 따라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법 체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탈레반 조직원의 국내 밀입국 사례도 적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외교행사를 치렀는데 큰 문제없이 잘 치르지 않았느냐, 따라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 그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는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되고 정상들이 긴급 귀국하는 그러한 사태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를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예정대로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범규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헌법 5조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 군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렸지만 이런 군이 일반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배치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민과 접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산악지역이라든가 교량·가스저장소와 같이 대민 접촉이 거의 없는 이런 국가 중요 시설에만 군 병력의 일부를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1980년을 떠올린다든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계엄의 아픔을 떠올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테러 예방활동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학문·예술·체육 등 현행 집시법 제15조에 해당되는 집회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제한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이렇게 단축을 했고 법 시행일도 원래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것을 9

월 1일로 3개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려고 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를 광범위하게 금지시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그것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국회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월 30일까지 그 조항을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야간 옥외집회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2년 전 100일 이상 서울의 도심을 마비시켰던 광우병 동란의 그런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닷새만이라도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으로 이 법안에 가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신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고 합헌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안 유지에 관한 한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앞으로도 정상회의는 매우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핵 안보 정상회의도 개최될 터인데 그때에도 또 이렇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위헌 결정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특정 조항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시법에 공백이 있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특별법을 만드는 그 노력을 왜 집시법 개정에는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위헌 결정을 받은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G20 회의보다도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했던 2000년의 ASEM 회의 그리고 2005년의 APEC 회의도 분명히 우리는 특별법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테러 위협이 더 높았던 때입니다.

물샐틈없는 경호는 조용히 하는 것이지 떠들썩하게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집회·시위만 전담하는 경찰 병력이 무려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G20 회의 하나 개최하면서 군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를 준비상사태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지적하기가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법의 발의 과정도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의원 입법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 입법일 경우에 사전에 공고해야 하고 거쳐야 하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원내 부대표 명의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법을 '청부입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위와 그리고 자존심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입법부이지 행정부가 편리할 때마다 사

용하면서 입법을 청부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입법을 가장한 반법치주의적인 법, 입법의 남용, 입법의 과용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이 되어서 G20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떤 법에도, 모법에 없습니다.

제8조는 심지어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9조에서는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 76조와 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요건에 의거해서 발동하게 되어 있고 군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손범규 의원께서 군의 동원 요건과 우리 77조의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장의 법적 권한은 대통령 경호 외에 법으로 인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합헌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G20 특별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개국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옵저버국의 정상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냉전의 잔재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의 경호안전 그리고 테러 방지가 급선무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그림자로 드리우고 있는 글로벌 테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자가 18만 명, 위·변조 여권 사용자가 연간 5000명이나 됩니다. 탈레반 조직원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KTX·지하공동구·정수장, 모두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9년 미국의 G20이나 덴마크의 기후변화회의에서 보듯이 행사장 주변의 대규모 시위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상회의장인 COEX는 혼잡 지역이라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행사 진행 자체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21세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전경이 얻어맞기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계엄령을 걱정하는 주장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기는 합니다.

물샐틈없는 경호, 조용히 하겠습니다. 군은 후방에만 배치되고 국민들께 거슬리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집회·시위의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한시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그 집회와 시위의 제한에 대해서도 정상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5일로 한정하고, 문화·종교 집회는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덴마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 그리고 인권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장 주변의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마는 이 법안은 민주당 위원장님의—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장님의—주재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2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1만 5000명의 군을 동원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 피츠버그에서 3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1만 6000명의 군을 동원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올 6월에 토론토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캐나다 전체 군—몇만 명도 안 되는 군인—중의 5000명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할 국가적 호재이며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한국을 지향하는 시점입니다. 국익의 차원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한시적인 법안이며, 선진·모범·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군을 경호를 시키면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23인, 반대 69인, 기권 8인으로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15시37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우윤근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우윤근 의원입니다.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등 3건의 위원회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국회 관계법에 대한 6건의 의장님의 의견 제시와 159건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하여 수차례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의와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므로 그 소관을 대통령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둘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면서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회한 경우라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다섯째,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 결과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윤리심

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와 징계를 징계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일하는 동안 도와주신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특히 제 협상파트너였던 김정훈 의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부대표로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국회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는 내용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은 현재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윤리특위 운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떤 개선도 없는 것이라서 소수정당 그리고 비교섭단체는 더욱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으로 끝나지 않은 회기는 2009년 2월 임시국회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국회 의석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인 대립이 벌어지는 일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그 결과입니다.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8대 국회 2년 동안 국회윤리특위에 발의된 징계발의 건은 모두 36건인데 이 중에 30건이 4대강 예산 저지, 이른바 MB 악법 저지 문제, 한미 FTA 비준 저지 문제, 노동법 날치기 통과 저지 문제와 같은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이후에 발의된 징계안들입니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라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에게 지도록 하는 국민소환제가 해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아직 의논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국회윤리특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역시 외부인사이기는 하지만 교섭단체대표들이 추천하는 분들이십니다.

윤리심사에 관여하는 두 기구의 구성과 운영 모두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되고 교섭단체들끼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징계발의 요건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 그리고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발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교섭단체만이 징계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되었던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국회 운영방식 개선의 첫 항에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당득표율이 5%이고 의석 수가 10석 이상인 단일정당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 자문위원들 모두가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개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요건도 이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주목한 소수야당을 배제하는 고질적인 잘못이 되풀이되는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교섭단체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리심사에 관한 개정안만 받아들인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국회 충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 심판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현존하는 윤리심사제도를 유지하는데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수정당도 참여할 수 있는 국회 내의 민주주의적인 운영제도를 만드는 일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승민·유성엽·정해걸·주광덕·홍정욱·이명수·이한성·신학용·노철래 의원 발의)

(15시49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8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홍일표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한나라당 소속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해서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동산·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산 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법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경매 외에 사적 실행의 방법으로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을 인정하며,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요청에 의한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제청구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수용 시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며 수용자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청구 방해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홍일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70인, 그래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이범래·김정권·고승덕·유성엽·한선교·이한성·김성수·여상규·진성호·김소남 의원 발의)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한성·정옥임·황우여·신성범·안효대·강용석·박순자·김성조·김정훈·신지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장제원 의원 발의)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

김낙성 의원 발의)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김낙성 의원 발의)

(15시57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安全委員長代理 李恩宰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기부자에 한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 갱신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조정・통합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그 관장사무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민방위협의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조사결과를 관계부처의 장인 위원들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능 10급은 유지토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이은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휴게실에 계신 분들 좀 빨리 들어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3인, 기권 2인, 그래

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1인, 그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4인,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5인, 기권 1인,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4인, 기권 1인,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4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2인,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김성회・김우남・나경원・노철래・박대해・박상은・서종표・송영선・안규백・양정례・유기준・원희룡・이명수・정진석・최구식 의원 발의)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16시08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을동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9월 2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지역신문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정부가 신문지원 제도의 통합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논의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제명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그 적용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업무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콘텐츠산업 정책수립과 조직 및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문화상품 개발 및 편의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근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하여 법정 법인화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동 문화재단을 국립중앙박물관법인에 통합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업원 등이 법률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주 등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김을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진 의원님 소개로 전라북도 고창고등학교 학생 150명이 지금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가운데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2인, 그래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3인, 기권 4인,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1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1인 가운데 찬성 160인, 기권 1인, 그래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재석…… 과반수의 여유가 7~8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건 남지 않았으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휴게실 계시는 것보다 의석에서 계속해서 이 심의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 의결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이은재·신학용·김영진·최구식·한선교·이명규·박대해·장광근·권영세·정의화·유재중·장제원·이한성·손범규·김기현·신영수·박순자·김재균·최철국·정태근·조승수 의원 발의)

24.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시종·최철국·김재균·김창수·우윤근·김진표·주승용·이춘석·변웅전 의원 발의)

27.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8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23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노영민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입니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증 또는 인증 취소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산업표준화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의 경우 인명 피해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정지 및 회수명령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인증 사실 등에 대한 통지의 경우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품의 회수명령 부분은 제품안전기본법과의 중복 부분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탁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을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 제명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우체국 창구 업무의 범위에 우체국예금 및 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조진래 의원, 성윤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사업 및 석유대체사업의 등록 취소 등이 있은 후 명의만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종전 영업시설을 재활용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 취소에 상응하는 영업장 폐쇄 명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각각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률용어를 쉽게 순화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 및 과태료 상환 등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회의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 임무를 오늘 본회의로써 끝냅니다.

저는 말없이 떠나겠습니다.

(웃음소리)

요즘은 짧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8인, 그래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9인 가운데 찬성 158인, 기권 1인, 그래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0인 가운데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가운데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9인 가운데 찬성 158인, 기권 1인 그래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성엽·유승민·임동규·이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김영진 의원 발의)

(16시28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29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知識經濟委員長代理 金容九 말없이 떠나신다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장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희룡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고, 향후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 조정하여 업종의 전문성·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창업 촉진을 위해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토록 하며, 재택창업 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병수 의원과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분쟁조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분쟁조정 신청자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하는 경우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위 법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김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4인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3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6.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7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3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화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李和洙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이화수 의원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3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2분)

○부의장 문희상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부의장 문희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

민주당 경기 광명 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SSM이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절규를 듣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들에게 간곡히 알려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일 새벽 2시 경기 광명에서는 심야에 SSM이 야반도주식으로 편법 개점을 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간에 합의하여 통과된 상생협력 촉진법에 규정된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피하기 위한 야간 편법 개점입니다.

예전의 편법 개점이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의 야간 편법 개점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간판을 달고 보자는 홈플러스식 야반도둑 개점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말 사업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을 만든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광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일자 신문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인천에서는 갈산·부개동 일대의 SSM 개점을 반발해 온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부산에서도 부산지역 4개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한 바 있어 국회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1995년 WTO 서비스 협정인 GATS가 발효된 이후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6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8대 상반기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에 16건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청원 및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결의안 등 도합 26건을 모아 지난 4월 임시국회 시 지식경제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SSM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심에 찬 여야 합의를 하여 대안 2건을 마련하여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SSM 문제에 대해 참으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진지한 토론 끝에 힘들게 만들어진 대안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도 많이 했고, 수많은 공청회와 비공식·공식 간담회를 통해 소상인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경위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매듭지었습니다.

정말 고뇌에 찬 고심 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신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또 최경환 장관님을 비롯한 여야 지경위원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힘겹게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이 막중한 시기에 지경위에서 고려한 수많은 사항들이 다 보류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골목상권의 보호, 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18대 국회 299명의 의원들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SSM의 품목 제한은 WTO/GATS 협정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식품소매업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제외한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제품, 빵 및 제과, 캔음료, 담배 등 개방제외 품

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통상전문가들은 말합니다. WTO/GATS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은폐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품목 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허가제와 같은 성격의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WTO 협정상 안 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의 얄팍한 권위에 눌려서 대내·대외 협상을 위한 은폐의 장막에 휩싸여 입법부가 소상인 보호에 눈을 감는다면, 고심과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바로 앞둔 18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이 눈을 감는다면, 17~18대 6년에 걸쳐서 마련한 장기 미제 과제의 해법을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좌절된다면, 거대 골리앗만을 편드는 입법권의 해태 행위에 대하여 전국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은…… 세종문화회관 앞과 정동에서 많은 중소상인 단체가 친대기업 정책만을 고수하며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SSM 규제 의지 없는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명에서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국회에서 입법을 하여도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여, 불공정하게 남의 눈을 피하여 기습적으로 한밤중에 도망가는 야반도주처럼 야간 도둑 입점을 하는 대기업 SSM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백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의 TOD 동영상을 국방부가 숨기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의 동영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국방부는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침몰 전과 침몰 후의 동영상은 있지만 하필이면 사고 발생 순간의 동영상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모처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참모부장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 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합참의 작전참모부 산하 정보작전처에서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문병옥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은 그런 동영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만 진실은 분리 동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영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합참의 고위 군 관계자들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서 침몰 당시의 TOD 동영상은 일반 사건 현장에서 CCTV 기록처럼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사고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폭발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물기둥이 얼마나 솟아올랐는지, V자로 꺾였는지, 역V자로 꺾였는지 등을 알려줄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민군합동조사단에게 경고합니다.

내일 조사 결과에 사건 당시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어야 합니다.

군 관계자들의 계획적인 은폐 혐의가 있습니다. 위증에 기초한 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국민들에게 강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5월 말에 대국민긴급담화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의 발표를 투표일 직전에 해야 합니까?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두려워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 당시 동영상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더해서 그것을 누가, 언제 보았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발표될 조사 결과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저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희상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익산시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추모곡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치 때나 쓰는 '방아타령'을 준비했다가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 시간 서울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축하 화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축제입니까? 피 흘린 역사적 현장이 잔칫집입니까?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장에서 잔칫집 타령, 축하 화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상식도 근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민주사회의 자유에 걸맞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되묻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차라리 권위주의나 독재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까?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엔에서 파견된 특별보고관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울광장 집회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유엔 보고관이 한국에 오는 기간에 맞춰 허용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에서는 주최 측에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집회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국회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오간 데 없고 단지 유엔에서조차 들고 나오니까 잠깐 쇼하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수준입니다.

박원순 변호사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또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이런 식이라면 누가 정부정책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곤봉 대신 소송으로 막을 뿐이지 80년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미네르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이 모호해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을 하려면 기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사항은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말·글, 집회의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엔인권위 이사국인 나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나라, 이것이 이명박 정부 2년의 성과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유엔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더구나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이란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민주주의가 이란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국정원에서 유엔 보고관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관이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후퇴도 모자라 유엔 직원을 감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막나가는 것,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앉아 국민 탓을 하며 법치주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일제시대 때 법이 없었습니까, 전두환·노태우 시대 때 법이 없었습니까? 법을 무시한 거리의 정치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비열한 정치를 하는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무데뽀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신을 자성하십시오.

어제 5·18 기념식에 대통령은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좋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 낸 민주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숭고한 5·18 정신을 짓밟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두가 헌법에 명시된 가치입니다. 대통령직 5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조금이나마 5·18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하면 그 기본부터 지키십시오. 바로 이것이 어제 광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뜻이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의원 한 분 한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23인)

강길부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순자	박영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문환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진성호	진수희	진영
허원제	현기환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69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건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유성엽	이낙연
이미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홍희덕			

기권 의원(8인)

김성곤	송훈석	이명수	이용경

이 한 구　이 혜 훈　정 하 균　최 연 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48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천　강 용 석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웅 전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조 해 진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 문 순　최 연 희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강 기 갑　곽 정 숙　권 영 길　이 정 희
홍 희 덕

기권 의원(25인)

강 기 정　강 성 종　강 창 일　김 성 곤
김 춘 진　노 영 민　문 학 진　박 선 숙
박 영 선　백 재 현　송 영 선　신　건
안 민 석　양 승 조　이 미 경　이 종 걸
장 세 환　정 동 영　정 범 구　정 하 균
조 배 숙　주 승 용　최 규 식　최 영 희
추 미 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홍희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아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구상찬 이미경 이애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범래 이석현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이춘석 홍영표

기권 의원(1인)

강성종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세환 전병헌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강성종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9인, 기권 의원 없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성종 서종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서종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대해 박보환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성윤환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진래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박선숙 서종표 주승용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서종표

기권 의원(1인)

김충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 성 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주 선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최 영 희

기권 의원(4인)

강 성 종　김 상 희　서 종 표　이 종 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주 선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서 종 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주 선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서 종 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세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주 선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영환 서종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추미애 허원제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서종표 최영희

기권 의원(2인)

김상희 성윤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유정 김진애 전여옥 정범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성윤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진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미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춘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정두언 정장선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한성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9인)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윤성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규식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유기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9인, 기권 의원 없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기권 의원(1인)

정범구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용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고승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성천 박대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최규성 최연희 최영희
추미애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백원우

(송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4인, 기권 의원 1인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성동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영　최 규 성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출석 의원(24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해 진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문 순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8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효 재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천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옥임 정진석 정태근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영택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 영 천정배
최규식 최영희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22인)

고흥길 김무성 김성곤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혜성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백재현
서상기 서종표 양승조 이군현
이정희 이춘석 정하균 정해걸
최영희 홍희덕

○청가 의원(16인)

김영선 김우남 박근혜 박상은
박은수 박준선 서병수 이상민
이성남 임영호 조진형 최병국
최재성 최철국 허 천 홍정욱

○국회사무처

입 법 차 장 안 병 옥
의 사 국 장 이 종 후

○출석 국무위원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환 경 부 장 관 이 만 의
노 동 부 장 관 임 태 희

○출석 정부위원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 현 호
방송통신위원장 최 시 중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강운태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당	2010. 5. 13
송영길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이광재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이시종	충청북도 충주시		
이계진	강원도 원주시	한나라당	
박상돈	충청남도 천안시을	자유선진당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 윤 성
5월 4일부터 의장 귀국 시까지
(2010. 5. 4)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변경전	변경후	연월일
한나라당	안상수	김무성	2010. 5. 4
민주당	이강래	박지원	2010. 5. 7

○의안 제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권경석·김세연·정갑윤·이인기·이사철·김소남·김태원·윤영·이명규·정두언·허천 의원 발의)

4월 2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정영희·노철래·이한성·임영호·조경태·유정현·김춘진·박보환·윤상일·정해걸·박영아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김춘진·이종걸·서갑원·안민석·정영희·이윤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이용경·조영택·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신학용·유승민·조경태·유성엽·박선숙·조영택·유원일·김재윤·이강래·전혜숙·박지원·변재일·김상희·서종표·안규백·장세환·김영록·신성범·강석호·안상수·장제원·손범규·신지호·정미경·김재균·이용섭·안민석·조배숙 의원 발의)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 4. 28 심재철·권성동·김금래·안경률·임해규·진수희·원희목·김소남·손숙미·김동성·안효대·현경병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류근찬·이진삼·김영록·김낙성·이인기·김창수·임영호·안규백·박상돈·김용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한선교·김무성·이한성·황우여·이해봉·안형환·김금래·안홍준·김소남·이인기 의원 발의)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이인기·이한성·유기준·김충조·홍영표·이해봉·안홍준·박대해·정해걸·황우여·김성순 의원 발의)

4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양승조·최영희·송영길·이춘석·김동철·박주선·최인기·조배숙·이미경·최철국 의원 발의)

4월 29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김용구·이명수·최철국·정영희·김창수·고승덕·노철래·이영애·나성린·임영호·안규백·오제세·임동규·배은희·김영진·김성곤·박상돈·이명규·송훈석·이재선·정장선·김효석·이해봉·권선택·김영록·김낙성·김진표·이진삼·서갑원·최인기·전현희·강운태·홍영표·이상민·정태근·정양석·김을동·박선영 의원 발의)

4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범래·김학용·유정현·이은재·유기준·여상규·윤영·김무성·김성수·강명순·황영철 의원 발의)

4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황영철·홍준표·김성수·박준선·이성헌·이해봉·권경석·이범래·권영진·이인기 의원 발의)

4월 3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장윤석·원혜영·정해걸·이한성·박민식·오제세·김금래·유정현·박순자·안경률·안홍준·박대해·이철우·김광림·황우여·박영아 의원 발의)

5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이시종·우윤근·강성종·김유정·김창수·안규백·박주선·이춘석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노영민·이시종·최철국·주승용·우윤근·안규백·박주선·이춘석·강성종·전병헌·김재균·김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혜훈·정해걸·박준선·박상은·홍준표·이한성·박영아·서병수·구상찬·안홍준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혜훈·정해걸·박준선·박상은·홍준표·이한성·박영아·서병수·구상찬·안홍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10. 4. 29 이혜훈·정해걸·박준선·박상은·홍준표·이한성·박영아·서병수·구상찬·안홍준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혜훈·정해걸·박준선·박상은·홍준표·이한성·박영아·서병수·구상찬·안홍준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두아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두아·조문환·고승덕·박준선·강용석·구상찬·나경원·조원진·박대해·정병국·배은희·이한성·신영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진삼·임영호·권선택·김용구·김창수·심대평·이재선·김성회·이용희·김충환·강기갑·이해봉·류근찬·이명수·이성헌·김성순·김영진·이인기·변웅전·김낙성·박상돈·유성엽 의원 발의)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허원제·이해봉·이군현·이한성·박영아·박선영·이성헌·이경재·유기준·유재중·한선교 의원 발의)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김혜성·이한성·노철래·홍영표·김태원·이명수·이성헌·김성순·김정·윤상일·유성엽 의원 발의)

地域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김혜성·이한성·노철래·김태원·이해봉·이명수·이성헌·김성순·김정·윤상일·유성엽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강성천·강기갑·김성식·김장수·노철래·박선영·유원일·이용경·이한구·정옥임·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성헌·권영진·이명수·이해봉·안홍준·황우여·김우남·이한성·신학용·유재중·배영식·임두성 의원 발의)

4월 3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이계진) 사직의 건

(2010. 4. 30 이계진 의원 제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유정현·안경률·박대해·정옥임·이범래·김성수·김성태·권성동·유기준·윤영·이주영·박보환·손범규·김태원·여상규·이화수·김학용·정의화·강석호·이은재·현기환·강성천·이해봉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유정현·안경률·박대해·정옥임·이범래·김성수·김성태·권성동·유기준·윤영·이주영·박보환·손범규·김태원·여상규·이화수·김학용·정의화·강석호·이은재·현기환·강성천·이해봉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유정현·안경률·박대해·정옥임·이범래·김성수·김성태·권성동·유기준·윤영·이주영·박보환·손범규·김태원·여상규·이화수·김학용·정의화·강석호·이은재·현기환·강성천·이해봉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유정현·안경률·박대해·정옥임·이범래·김성수·김성태·권성동·유기준·윤영·이주영·박보환·손범규·김태원·여상규·이화수·김학용·정의화·강석호·이은재·현기환·강성천·이해봉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10. 4. 30 정부 제출)

이상 11건 5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유정현·안경률·박대해·정옥임·이범래·김성수·김성태·권성동·유기준·윤영·이주영·박보환·손범규·김태원·여상규·이화수·김학용·정의화·강석호·이은재·현기환·강성천·이해봉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유정현·안경률·박대해·정옥임·이범래·김성수·김성태·권성동·유기준·윤영·이주영·박보환·손범규·김태원·여상규·이화수·김학용·정의화·강석호·이은재·현기환·강성천·이해봉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김성순·김영환·김소남·이재선·홍재형·정동영·신학용·오제세·최영희·조영택·이한성·조정식·이찬열·이미경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0. 4. 30 정부 제출)

이상 7건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2010. 4. 30 정부 제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이성헌·이한성·이명수·한선교·임두성·양승조·정해걸·김성수·안홍준·김춘진 의원 발의)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박준선·강명순·고승덕·권성동·권영진·김광림·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지호·원희목·유승민·이명규·이은재·이진복·임동규·정진석·조원진·홍사덕·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國,公有不動産의登記囑託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0. 4.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5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0. 4. 30 정부 제출)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원유철·안형환·권영세·권영진·나성린·김성회·신지호·김태원·유정현·안경률·이한성·신상진·공성진·유기준·김소남·안홍준·황우여·이명수·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0. 4. 30 정부 제출)

이상 4건 5월 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이성헌·이한성·이해봉·이명수·한선교·임두성·양승조·정해걸·김성수·김춘진 의원 발의)

國家債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國債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4.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5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

(2010. 4. 30 안형환·이인기·이한성·이용경·한선교·이해봉·정해걸·이화수·여상규·박준선 의원 발의)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0. 5. 3 홍재형·이종걸·김성곤·김성순·오제세·조경태·박병석·변재일·정범구·

노영민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0. 5. 3 홍재형·양승조·김성곤·김성순·오제세·조경태·박병석·변재일·정범구·노영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 의원 대표발의)

(2010. 5. 3 이용희·신학용·노철래·황우여·이인기·이진삼·이해봉·강기갑·김성순·정동영·이명수·임영호·김영진·유성엽·황영철 의원 발의)

5월 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박상돈) 사직의 건

(2010. 5. 4 박상돈 의원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김혜성·송영선·김태원·노철래·이한성·이영애·유기준·배영식·우제창·이명수 의원 발의)

5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윤영·장광근·노철래·권경석·김무성·안효대·허천·이해봉·강길부·정갑윤 의원 발의)

5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이명수·신학용·유기준·임영호·이인기·이한성·김을동·김기현·이상민·김용구 의원 발의)

5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이인기·김무성·유기준·황우여·권영진·안형환·박선영·김성회·이성헌·이명수·김소남 의원 발의)

5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김기현·권영진·배은희·김성태·유일호·황영철·고승덕·백성운·송영선·이주영·권택기·유기준·이명수·이해봉·나성린 의원 발의)

5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아동빈곤법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강명순·강길부·강석호·강성천·강승규·강용석·고승덕·고흥길·권성동·권영세·권영진·권택기·김금래·김동성·김무성·김선동·김성수·김성식·김성태·김성회·김세연·김소남·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재경·김충환·김태원·김학용·김효재·나경원·나성린·박민식·박상은·박준선·배영식·백성운·서병수·서상기·손숙미·신상진·신성범·신영수·신지호·안형환·안홍준·안효대·여상규·원유철·유승민·유재중·유정복·유정현·윤석용·윤영·이경재·이두아·이명규·이명수·이범래·이사철·이성헌·이은재·이정선·이종혁·이주영·이진복·이철우·이춘식·이학재·이한구·이한성·이화수·임동규·임해규·장제원·전여옥·정두언·정옥임·정의화·정진석·정진섭·정태근·정해걸·정희수·조문환·조원진·조윤선·조전혁·조진래·조해진·진성호·진수희·진영·차명진·한선교·허원제·허천·현경병·현기환·홍사덕·홍일표·홍정욱 의원 발의)

5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조원진·김재윤·정희수·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진복·이한성·정병국·정해걸 의원 발의)

5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4 조원진·김재윤·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성헌·이진복·이해봉·정병국·정해걸·정희수·황우여 의원 발의)

5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강명순·강길부·강석호·강성천·강승규·강용석·고승덕·고흥길·권성동·권영세·권영진·권택기·김금래·김동성·김무성·김선동·김성수·김성식·김성태·김성회·김세연·김소남·김영우·김용태·김장수·김재경·김충환·김태원·김태환·

김학용・김효재・나경원・나성린・박상은・박준선・배영식・백성운・서병수・서상기・손숙미・신상진・신성범・신영수・신지호・안형환・안홍준・안효대・여상규・원유철・유승민・유정복・유정현・유지근・윤상현・윤석용・윤영・이경재・이두아・이명규・이범래・이사철・이성헌・이애주・이은재・이정선・이주영・이진복・이철우・이춘식・이학재・이한성・이화수・임동규・임해규・장제원・전여옥・정두언・정옥임・정의화・정진석・정태근・정해걸・정희수・조문환・조원진・조윤선・조전혁・조진래・조해진・진성호・진수희・진영・차명진・한선교・허원제・허천・현경병・현기환・홍사덕・홍일표・홍정욱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공성진・이한성・박순자・김효재・이사철・이화수・김성회・현경병・원희목・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김유정・강기정・김소남・김영록・노영민・박영선・박주선・신학용・유원일・이석현・이한성・홍영표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최재성・백원우・신학용・양승조・최영희・조영택・박영선・최문순・김춘진・신건・장세환・안민석・이찬열・김재윤・박선숙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전현희・박은수・백원우・양승조・최규식・이춘석・김재윤・이석현・송영길・이용섭・김영환・이낙연・최재성・안규백・김영록・김춘진・김진표・유선호・김부겸・송민순・정동영・이찬열・박기춘・정장선・최철국・노영민・최문순・조경태・김성순・최규성・전병헌・조영택・김재균・이성남・박선숙・강성종・강창일・문희상・박상천・박지원・천정배・조배숙・정범구・김우남・김동철・최인기・이미경・김영진・원혜영・박병석・김유정・조정식・우윤근・주승용・장세환・변재일・김효석・이윤석・문학진・박주선・전혜숙・홍재형・김진애・서종표・홍영표・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박순자・이한성・황우여・신성범・김성순・이해봉・김소남・김기현・김재윤・정의화 의원 발의)

5월 7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박순자・박대해・김소남・유성엽・임동규・이한성・안홍준・신성범・이성헌・정의화 의원 발의)

5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이인기・정병국・유기준・권영진・이해봉・안홍준・정해걸・박선영・김성순・이종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김성곤・김춘진・전현희・강봉균・우제창・홍재형・박은수・유성엽・이한성・박기춘・조영택・양승조・홍영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김성곤・김춘진・강봉균・양승조・우제창・김우남・박은수・박선숙・유성엽・김성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0. 5. 6 김선동・이한성・한선교・원희룡・이성헌・김성태・김영선・손숙미・박보환・홍준표・김을동 의원 발의)

5월 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7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0. 5. 7 손숙미・김을동・서상기・김소남・조진래・유재중・원희목・이정선・김효재・정해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2010. 5. 7 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2010. 5. 7 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2010. 5. 7 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2010. 5. 7 홍정욱·유승민·유성엽·이해봉·이한성·강기정·이찬열·나성린·문학진·진성호·우제창·신영수·황우여·이인기 의원 발의)

5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강운태) 사직의 건

(2010. 5. 7 강운태 의원 제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0. 5. 7 최인기·강기정·김영록·강운태·이용섭·김춘진·김낙성·이인기·김영진·김효석·조영택·문학진·오제세·구상찬·강봉균·양승조·김재경 의원 발의)

5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

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정병국・박대해・김성수・안형환・고승덕・유재중・최구식・김무성・박준선・여상규・강석호・조진래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11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김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문희상·강성종·김성수·박기춘·박선숙·서종표·손범규·송민순·신건·신학용·이해봉·홍재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상민·김창수·이재선·김용구·이명수·임영호·권선택·변웅전·류근찬·김낙성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장윤석·김광림·노철래·박대해·박민식·박준선·안홍준·이한성·이해봉·조영택·황영철·황우여·허태열 의원 발의)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김재균·최철국·양승조·강창일·최문순·박주선·장세환·노영민·강기정·전병헌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원희목·김무성·김소남·오제세·이애주·유재중·안홍준·박은수·김기현·허원제·서상기 의원 발의)

5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박주선·김동철·박영선·김재윤·우윤근·장세환·양승조·안규백·노영민·문학진·이성남·김재균·전병헌·이미경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박주선·김동철·박영선·김재윤·우윤근·장세환·양승조·안규백·노영민·문학진·이성남·김재균·전병헌·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외교활동 지원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정의화·김성곤·김재윤·박순자·이주영·김춘진·김충환·이명수·김창수·김을동·김효재·이춘식·여상규·송민순·이한성·허원제·권영진·김성태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정의화·김성곤·김재윤·박순자·이주영·김춘진·김충환·이명수·김창수·김을동·김효재·이춘식·여상규·송민순·이한성·허원제·권영진·김성태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정의화·김성곤·김재윤·박순자·이주영·김춘진·김충환·이명수·김창수·김을동·김효재·이춘식·여상규·송민순·이한성·허원제·권영진·김성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송훈석·정해걸·이한성·송민순·조영택·유성엽·안홍준·유원일·이해봉·이명수·김충조·황우여·홍희덕·이인기·김영진 의원 발의)

5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홍재형·이낙연·신학용·전현희·조정식·김영진·조영택·김성곤·이시종·노영민 의원 발의)

5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안홍준·홍영표·이해봉·황우여·한선교·이성헌·김소남·김성순·이혜훈·현경병·유재중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안홍준·홍영표·이해봉·황우여·한선교·이성헌·김소남·김성순·이혜훈·현경병·유재중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안홍준·홍영표·이해봉·황우여·한선교·이성헌·김성순·이혜훈·현경병·유재중 의원 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최영희·강기정·김상희·김재균·박은수·신건·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석현·이찬열·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5월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김춘진·양승조·안민석·김영진·신낙균·이경재·정의화·김영록·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최영희·강기정·김상희·김재균·박은수·신건·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석현·이찬열·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5. 11 최영희·강기정·김상희·김재균·박은수·신건·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석현·이찬열·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5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

(2010. 5. 11 최영희·강기정·김상희·김재균·박은수·신건·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석현·이찬열·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5월 1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정희수·윤영·이한성·박대해·이두아·정해걸·정병국·이인기·김태환·이철우·송훈석 의원 발의)

5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황우여·유기준·조전혁·이한성·권영진·이영애·박순자·이해봉·이인기·김동성·박보환·김태원·김영진·박선영·김용태·이성헌·김세연·홍준표·이주영 의원 발의)

5월 1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강기갑·홍희덕·권영길·김춘진·최철국·김낙성·곽정숙·이정희·김영진·유원일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이성헌·유기준·김정권·홍정욱·이해봉·박상돈·정병국·김성수·이한성·김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강기갑·홍희덕·권영길·김춘진·최철국·김낙성·조배숙·곽정숙·이정희·김영진·유원일·김재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강기갑·홍희덕·권영길·김춘진·최철국·김낙성·조배숙·곽정숙·이정희·김영진·유원일·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이인기·유기준·김무성·이한성·김태원·우제창·이해봉·이종혁·안홍준·신영수 의원 발의)

5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3 김우남·조경태·조배숙·박선숙·

유성엽・양승조・서갑원・권영세・김유정・이명수・박영선 의원 발의)

5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5. 13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김부겸 의원 발의)

5월 14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5. 13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김부겸 의원 발의)

5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3 변웅전・송훈석・최영희・김창수・정하균・임영호・이영애・이진삼・김영록・이재선 의원 발의)

5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 5. 13 김영록・강기정・강운태・김동철・김성곤・김영진・김우남・김춘진・김효석・변재일・이윤석・이춘석・조경태・조영택・주승용・최인기 의원 발의)

5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 5. 13 김영록・강기정・강운태・김동철・김성곤・김영진・김우남・김춘진・김효석・변재일・이윤석・이춘석・조경태・조영택・주승용・최인기 의원 발의)

5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유재중・박대해・권영진・이정선・이애주・정병국・원희목・안홍준・김금래・신성범・허원제・현경병 의원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권영진・이한성・황영철・이해봉・나성린・권택기・김선동・최구식・김정훈・박보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유기준・김무성・이한성・신학용・이해봉・강기갑・박상은・이종혁・황우여・조경태・홍사덕・허원제・이인기・김충조・김기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권영진・배영식・이한성・김태원・황영철・이해봉・정진석・권택기・백성운・이인기・김선동・최구식・김정훈・박보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영록・강기정・김영진・김재균・김진애・김춘진・신건・안규백・원혜영・조경태・조영택・최인기・홍재형 의원 발의)

5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원희목・유재중・곽정숙・손숙미・박은수・서상기・여상규・김정훈・전혜숙・유일호・김춘진・이정선 의원 발의)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김낙성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김낙성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김낙성 의원 발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7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김낙성 의원 발의)

5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기현·이한성·이해봉·김성수·권영진·김성태·안홍준·신성범·윤상현·나성린·임영호·이성헌·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5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윤영·장광근·권경석·김무성·안효대·허천·이해봉·강길부·정갑윤·정희수 의원 발의)

5월 1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홍희덕·최문순·양승조·조승수·권영길·유원일·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재윤·이명수 의원 발의)

5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변웅전·권선택·정하균·손숙미·임영호·김혜성·김창수·이재선·이정선·강명순·윤석용 의원 발의)

5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김성수·김우남·이한성·이범래·유기준·유성엽·황우여·이성헌·임두성·유정현 의원 발의)

5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김성수·김우남·이한성·이범래·유기준·홍영표·유성엽·황우여·이성헌·임두성·유정현 의원 발의)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김성수·김우남·정병국·이한성·이범래·유기준·홍영표·유성엽·이해봉·정해걸·이성헌·임두성·유정현 의원 발의)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해군 천안함 피폭 침몰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2010. 5. 18 윤상현·권영진·김기현·김옥이·김혜성·배은희·신성범·안홍준·이성헌·이학재·정갑윤·최구식·허태열 의원 발의)

5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0. 5. 18 이정희·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영선·박주선·김동철·우윤근·조배숙·홍희덕 의원 발의)

5월 19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5. 18 정부 제출)

5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0. 5. 18 이애주·원희목·손범규·조배숙·홍정욱·김소남·정병국·정해걸·이해봉·신영수 의원 발의)

5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0. 5. 18 유정복·김성수·김혜성·이성헌·김옥이·권영진·신영수·홍정욱·정병국·신학용·이해봉·김충환 의원 발의)

5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8 김소남·김성수·이애주·김금래·이은재·권경석·박순자·신지호·배은희·이해봉 의원 발의)

5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8 김기현·신학용·유기준·김정권·김성순·권영진·임영호·이성헌·이명수·이한성·배영식·조배숙·이해봉·윤상현·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5월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

(2010. 5. 19 의장 제의)

제2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 5. 19 의장 제의)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29일간)
휴회의 건
(2010. 5. 19 의장 제의)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12일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0. 4. 2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0. 4. 27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0. 4. 27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0. 4. 29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0. 4. 7 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 8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2009. 11. 3 정부 제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09. 7. 27 홍일표·유승민·유성엽·정해걸·주광덕·홍정욱·이명수·이한성·신학용·노철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2. 17 이상민·김영진·박선영·박상돈·임영호·김용구·안민석·김창수·이명수·김낙성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8. 9. 8 김영선·김태원·김정권·박보환·구본철·양정례·황우여·유기준·홍장표·이성헌·박준선·윤상현·김성수·이한성·박종희·안상수·신상진·이경재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2. 17 이상민·김영진·박선영·박상돈·임영호·김용구·안민석·김창수·이명수·김낙성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2. 17 이상민·김영진·박선영·박상돈·임영호·김용구·안민석·김창수·이명수·김낙성 의원 발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0. 2. 18 박상돈·김창수·이상민·임영호·김용구·진영·이명수·오제세·박선숙·류근찬·이해봉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5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2009. 9. 29 이범래·김정권·고승덕·유성엽·한선교·이한성·김성수·여상규·진성호·김소남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3. 3 안상수·이한성·정옥임·황우여·신성범·안효대·강용석·박순자·김성조·김정훈·신지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장제원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22 정부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 21 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김낙성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 21 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8. 7. 7 이명규·김태환·조전혁·배영식·나경원·김성수·손범규·안상수·황영철·강석호·신상진·장광근·김태원·이성헌·박보환·한선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8. 7. 24 손범규·구상찬·김옥이·임두성·이춘식·조진래·조해진·김태원·백성운·이성헌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박종희·양정례·이화수·백성운·김성곤·서청원·김성수·유성엽·김충조·김소남·박준선·구본철·정병국·박민식·오제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 16 신상진·손숙미·김태원·안상수·김성수·정양석·강창일·이한성·정영희·박종희·김충환·이시종·박대해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9. 1. 19 권영세·이경재·유승민·임두성·박종희·한선교·김영우·원희룡·권영진·김충환·조윤선·이정선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유정현·권경석·권영진·권택기·김동성·김성수·김성식·김용태·김학용·김효재·김희철·문국현·박준선·신성범·신지호·원희룡·이범래·이성헌·이애주·임두성·장광근·장제원·전병헌·정해걸·조진래·조진형·진성호·허범도·현경병·현기환·홍정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9. 6. 23 김종률·변재일·양승조·김재윤·최인기·이시종·박주선·강봉균·박영선·이명수·정동영·김성곤·김성순·박선숙·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유성엽·이용희·김영진·노영민·오제세·홍재형·이미경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5. 21 최인기·우제창·김영록·김희철·전현희·강기정·김유정·김낙성·문학진·이용삼·우윤근·주승용·이윤석·이낙연·이용섭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6 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서병수·정갑윤·최구식·신성범·유재중·김세연·정해걸·임영호·유기준·유승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2 이혜훈·김성태·이경재·안효대·이화수·유재중·이주영·이정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0. 4. 9 권경석·유정현·정갑윤·최구식·안홍준·신성범·김태원·이은재·김소남·신지호·원유철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3. 11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발의)
(2009. 11. 20 이은재 의원 외 12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 정부 제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3 임두성·한선교·김성수·허태열·최욱철·정갑윤·최경환·정해걸·황우여·안상수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0. 1. 29 이철우·고승덕·김성태·김세연·김태환·서상기·정두언·정수성·정해걸·조전혁 의원 발의)
(이상 1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2. 24 정부 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09. 2. 26 김을동·김성회·김우남·나경원·노철래·박대해·박상은·서종표·송영선·안규백·양정례·유기준·원희룡·이명수·정진석·최구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8. 5 노영민·이시종·최철국·김재균·김창수·우윤근·김진표·주승용·이춘석·변웅전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1 이학재·유성엽·유승민·임동규·이한성·유정복·신성범·배은희·이화수·유재중·백성운·여상규·정해걸·조문환·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09. 8. 17 이종혁·이은재·신학용·김영진·최구식·한선교·이명규·박대해·장광근·권영세·정의화·유재중·장제원·이한성·손범규·김기현·신영수·박순자·김재균·최철국·정태근·조승수 의원 발의)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09. 10. 29 정부 제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3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5 정부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2. 1 강창일·최영희·김재윤·양승조·장세환·김진애·김재균·김영진·김성곤·김우남·이명수 의원 발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27 정부 제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9. 5. 15 오제세·이상민·홍재형·임영호·박상돈·김종률·유성엽·진성호·양승조·박대해·김재윤·이한성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010. 1. 22 원희룡·유승민·박민식·고승덕·이한성·이인기·강용석·주승용·김우남·정수성·이명규·신영수·정병국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0. 2. 8 박순자·이한성·조원진·성윤환·안경률·김성수·김정훈·김성회·이종혁·이명규·이사철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4 서병수·이인기·이해봉·유승민·박종근·유기준·임영호·이한성·정갑윤·구상찬·김성태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9. 12. 7 김태환·정희수·서상기·정갑윤·조진래·이학재·이명규·임동규·배은희·이철우·정해걸·권성동·김성조·주성영·김효재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2009. 4. 23 성윤환·나성린·배은희·안상수·유기준·이한성·정병국·정해걸·조문환·주성영·최구식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2009. 2. 16 조진래·이한성·김성수·손범규·손숙미·안상수·이경재·유성엽·박준선·이인기·이화수·장제원·신성범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1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 6. 8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11. 12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8. 10. 6 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6 강승규·강석호·권영진·권택기·나경원·신상진·안형환·안효대·원희룡·이달곤·임동규·조해진·한선교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0. 4. 16 추미애·원혜영·김재윤·조원진·권선택·김상희·강성천·이화수·이찬열·홍희덕·문학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0. 5. 6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장 원광기 외 3635인으로부터 구상찬 의원 외 19인의 소개로 제출)

5월 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천안함 희생장병 처우에 관한 질문서

(2010. 4. 29 심재철 의원 제출)

동두천시 섬유패션센타 건립에 관한 질문서

(2010. 5. 3 김성수 의원 제출)

정부기관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관한 질문서

(2010. 5. 12 박선숙 의원 제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관한 질문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관한 질문서(소득세 추징)

금융기관 관리에 관한 질문서

(이상 3건 2010. 5. 12 주성영 의원 제출)

전북 익산 왕궁지역 오염원에 관한 질문서

(2010. 5. 13 김춘진 의원 제출)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기준에 관한 질문서

(2010. 5. 18 주성영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금융기관 관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4. 30 금융위원장 제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의 추진경과 및 실제 요금인하 효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5. 6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천안함 희생장병 처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5. 10 정부 제출)

동두천시 섬유패션센타 건립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0. 5. 13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2010. 5. 28 정부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제290회국회(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10년 5월 3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천안함침몰 관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력기관 및 중앙선관위의 관권선거개입 방지대책 등 대정부질문 실시, 스폰서검사 특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처리 관련
요 구 자	민주당 이강래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엽 의원 외 91인

(2010. 4. 29)